

강원도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

(제정) 2015-10-22 규정 제371호
(개정) 2016-02-03 규정 제378호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(개정) 2016-06-07 규정 제411호
(개정) 2021-02-25 규정 제56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3조(재정위원회의 설치) 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(이하 “재정위원회”)를 둔다. <개정 2016.4.25.>

제4조(재정위원회의 구성)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~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. <개정 2016.2.3>

② 당연직위원은 총 5명으로 하며 교학처장, 기획홍보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강원도 교육법무과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2.3., 2016.6.7.>

③ 일반직위원은 총 10명으로 하며 교원 2명, 직원 2명, 재학생 2명, 대학동문 1명, 강원도 추천 인사 1명, 강원도 의회 추천 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2.3.>

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대학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.

제5조(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)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교원 :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교수회에서 추천한다. <개정 2016.2.3.>

2. 직원 : 대학의 직원 중에서 직원단체(직원회 등)에서 추천한다. <개정 2016.2.3.>

3. 재학생 :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. <개정 2016.2.3., 2016.4.25.>

4. 대학 동문 : 대학의 동문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총동창회에서 추천한다. <개정 2016.2.3>
<개정 2016.4.25>

5. 강원도 추천 인사 :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·교육행정 등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를 강원도에서 추천한다. <개정 2016.2.3.>

6. 강원도의회 추천 의원 : 강원도의회 의원 중에서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다. <개정 2016.2.3.>

제6조(일반직위원의 임기)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재학생인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
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7조(재정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)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·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(이하 “수업료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4.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·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
5.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
6. 재정·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7. 대학회계직원(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)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
8.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
9.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
10.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제7조의2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① 재정위원회는 개의 및 산회의 일시, 안건, 의사,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,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2.25.>

② 재정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2.25.>

제8조(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) 제5조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) ① 총장은 중·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교학처장·사무국장 등 행정조직과 종합정보관장 등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(이하 “부서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③ 총장은 중·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시달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) ①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1조(예산의 전용) 총장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합리성·효율성·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 항내에서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다른 목에서 업무추진 비로는 전용할 수 없다.

제12조(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)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(이하 “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교직원은 교육, 연구,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, 연구,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, 착수시기,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강원도립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⑤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부정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,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)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, 복무 등의 근로조건(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장부 및 서식) 총장은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재정 및 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부 및 서식
2. 기타 총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및 서식

제15조(기타) 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9조 및 제10조의 경우 2016회계 연도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제정 전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의거 구성된 최초 재정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규정 제정 전 제7조제2호에 의거 편성된 2015년도 대학회계 예산은 이 규정에 의거 심의·의결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특례) 일반직위원 중 최초 재학생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최초 재학생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제

6조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(2016. 2. 3.)

본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4.25.)

본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6. 7.)

본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 2. 25.)

본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